

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견

의안 번호	1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4. 25.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제77조, 동법시행령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(단위:천원)

사업명	소재지	구분	지목 (구조)	면적 (m ²)	공시지가액	신축예정 공사비
	소 계			568.5	341,328	
구 청 사 부지매입	당리동 317-30	토지	대	228.1	137,088	-
	" 317-108			162.1	102,609	
	" 317-115			178.3	101,631	
건 축	위 지 상	건물	지상1, 지상3층	1,800	-	1,829,000

3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
○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

공유재산관리계획

200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회계명 : 일반회계

구 분		합 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비 고
	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원)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원)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원)	
취	계	4	688.7	440,052	4	688.7	440,052	-	-	-	
	토지 건물 기타	2	1,944.24	1,949,802	1	144.24	120,802	1	1,800	1,829,000	
득	1.매입	4	688.7	440,052	4	688.7	440,052	-	-	-	
	토지 건물 기타	2	1,944.24	1,949,802	1	144.24	120,802	1	1,800	1,829,000	
	2.교환 으로 취득										
	3.기타 취득										
분	계										
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4.매각										
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5.양여										
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6.교환 으로 처분										
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사용허가 및 대부	계										
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
2000년도 취득 재산목록(7-2)

구분	재산의 표시			추정금액 (천원)	취득시기	취득사유	현 소유자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	비고	
	소재지	지목(구조)	면적(㎡)							
당초	계		264.44	219,526						
	토지	하 단동 608-29	대	120.2	98,724	2000. 1/4분기	경로당부지 매입	재정경제부	사 하 구	
	건물	위 지 상	철근콘크리트 스투브	144.24	120,802	2000. 2/4분기	경로당건물 신축	-	"	
변경	총 계		2,632.94	2,389,854						
	소 계		264.44	219,526						
	토지	하 단동 608-29	대	120.2	98,724	2000. 1/4분기	경로당부지 매입	재정경제부	사 하 구	
	건물	위 지 상	철근콘크리트 스투브	144.24	120,802	2000. 2/4분기	경로당건물 신축	-	"	
	소 계		2,368.5	2,170,328						
	토지	당리동 317-30	대	228.1	341,328	2000. 2/4분기	구청사부지 매입	이명자(남구 대연동) 김의규(충남. 태안군) 황옥순(경기.부천.원미구)	사 하 구	추가
		" 317-108	대	162.1						
" 317-115		대	178.3							
건물	위 지 상	철근콘크리트 스투브	1,800	1,829,000	2000. 하반기	구청사 신축	-	"		

※ 토지는 공시지가, 건물은 신축예정공사비 기준임

구청사 부지매입 및 건축계획

1. 취득이유

- 전면 동기능 전환시 감축인력 구전입에 따른 사무실이 협소
- 행정의 전문화, 정보화 등에 따른 사무실 확충 필요
- 방문민원 휴식공간 부족 및 직원 후생복지 장소 마련이 시급

2. 취득대상 및 신축내역

(단위:천원)

사 업 명	소 재 지	구분	지 목 (구조)	면적 (㎡)	공시지가액	신축예정 공사비
	소 계			568.5	341,328	
구 청 사 부지매입	당리동 317-30	토지	대	228.1	137,088	-
	" 317-108			162.1	102,609	
	" 317-115			178.3	101,631	
건 축	위 지 상	건물	지상1, 지상3층	1,800	-	1,829,000

3. 사업개요

- 위 치 : 당리동 317-30, 317-108, 317-115번지
- 용도지역 : 준주거지역
- 규 모
 - 대 지 : 568.5㎡(172평)
 - 건 물 : 철.콘.스 지하1층, 지상3층 1,800㎡(544평)
- 사용용도
 - 구청사 제2별관

4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제77조, 동법시행령제84조
-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

5. 위치 및 지적도 : 별첨

위치 및 지적도

[당리동 317-30 · 317-108 · 317-115번지, 568.5㎡]

